

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.
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
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
지원되고 있습니다.

희망을 잇다, 삶을 잇다.

주거복지로드맵

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세요?

● 전세임대 문의처

지역본부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	1670-2591 *문자상담: 1670-2591 단, 45자 이내로 제한
경기지역본부	경기	1670-2592
인천지역본부	인천	1670-2593
부산울산지역본부	부산, 울산	051)460-5523~5528
대구경북지역본부	대구, 경북	053)603-2800
광주전남지역본부	광주, 전남	062)360-3265 062)360-3321 062)360-3324
대전충남지역본부	대전, 세종, 충남	042)470-0700
강원지역본부	강원	033)258-4166 033)258-4131 033)258-4127
충북지역본부	충북	043)220-8890 043)220-8891 043)220-8893
전북지역본부	전북	063)230-6162
경남지역본부	경남	1800-0553
제주지역본부	제주	064)720-3938 064)720-1036

☎ LH마이홈콜센터 1600-1004

| LH 청약 센터 | <https://apply.lh.or.kr>

| 전월세지원센터 | <https://jeonse.lh.or.kr>



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빠르게-

LH 전세임대 모바일웹

mjeonse.lh.or.kr

청년라이프 주거꿀팁 LH 청년전세임대

2018년 청년(대학생·취업준비생)
3순위 정기모집

● 신청기간 2018.5.14(월) ~ 2018.5.18(금)

청년 1·2순위는 연중 신청 가능하오니,
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



국토교통부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● 신청자격

|대 학 생|

모집공고일(2018.4.18)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·군 출신 대학생

|취업준비생|

- ① 모집공고일(2018.4.18) 현재 대학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
- ② 모집공고일(2018.4.18) 현재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

1순위	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,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% 이하 장애인 가구* 청년
2순위	전년도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*,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 가구* 청년
3순위	전년도 월평균소득 100% 이하 가구, 전년도 월평균소득 150%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

*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● 가구별 소득기준

[단위 : 원]

구분	3인 이하	4인	5인
50%	2,501,290	2,923,450	2,923,450
70%	3,501,810	4,092,830	4,092,830
100%	5,002,590	5,846,903	5,846,903
150%	7,503,885	8,770,355	8,770,355

※ 6인 이상부터는 모집공고문 참고

● 신청기간 2018.5.14(월)~2018.5.18(금)

● 신청방법

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

LH청약센터 <https://apply.lh.or.kr>에서 인터넷 신청

● 당첨자발표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

● 지원가능주택

|대 학 생|

대학소재지역[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] 및 연접 시·군에 소재한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으로 “전세” 또는 “보증부월세”로 계약 가능한 주택

|취업준비생|

신청지역[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도(道) 지역] 내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으로 “전세” 또는 “보증부월세”로 계약 가능한 주택
단, 부모님 또는 배우자(기혼자에 해당)의 주소지 시·군 제외

[주택유형] 단독,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일반형 청년전세임대(단독거주)

|지원한도액|

구분	수도권	광역시	기타지역
금액	1.2억원	9천5백만원	8천5백만원

|임 대 조 건|

구분	보증금	월임대료(지원금 기준)		
		4천만원 이하	4천~6천만원	6천만원 초과
1·2순위	100만원	연 1.0%	연 1.5%	연 2.0%
3순위	200만원	연 2.0%	연 2.5%	연 3.0%

* 정부계획에 따라 지원금액,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금액 적용

*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,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

(대학생은 졸업시, 취업준비생은 취업시 재계약불가)

수도권 전세금
8,000만원 주택에
3순위 청년이 입주한 경우



(임대보증금) 200만원

(월 임대료) [(전세금 - 임대보증금) × 3%(연) ÷ 12개월]

= [(8,000만원 - 200만원) × 3% ÷ 12] = 195,000원